#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특약

## 제1조(적용범위)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 관」, 「토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확인 된 본인명의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 (이하 "근거계좌"라 합니다.)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 제4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합니다.

## 제5조 (판매기간 및 판매한도)

이 예금은 별도의 판매기간 또는 한도를 정하여 판매하며, 판매기간 또는 한도는 모바일앱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스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제6조 (보관기간)

이 예금의 보관기간(이 예금의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서 판매기간 또는 한도 별로 정합니다.

# 제7조(가입제한)

이 예금은 근거계좌를 통한 연결 신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8조(금리적용)

이 예금의 기본금리는 가입일(자동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일을 의미합니다. 이하 가입일이라 합니다.) 당시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제9조 (먼저 받은 이자)

- ① 이 예금은 가입과 동시에 제8조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공제 전 이자를 지급 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먼저 받은 이자"는 지급 즉시 자동으로 근거계좌로 입금 처리 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먼저 받은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합니다.

# 제10조(만기시자동재가입)

- ① 이 예금은 고객이 만기일 전일까지 자동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 재가입이 실행됩니다.
- ② 가입금액 및 기본금리를 제외한 보관기간 등의 계약 조건은 직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초 보관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최대 3회까지 자동 재가입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다음 각호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자동 재가입을 신청했더라도 자동 재가입 되지 않습니다.

- 1. 이 예금에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
- 3. 근거계좌에 입금제한 또는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4. 이 예금의 만기일이 판매기간이 아닌 경우
- 5. 만기일에 최초 가입 시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한 경우
- 6. 근거계좌의 인출 가능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 ④ 고객이 제1항에 따라 자동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만기일에 제13조에 따라 원금에서 "먼저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재가입 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 원금으로 재가입하거나 원금에 추가 금액을 더하여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재가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9조에 따라 재가입 시점에 근거계좌로 입금 처리 합니다.

## 제11조 (중도해지금리)

- ① 만기일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② 만기일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일에 지급한 "먼저 받은 이자"와 제1항의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세후 중도해지이자의 차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 제12조(만기후금리)

만기일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리를 적용합니다.

#### 제13조(원천징수)

이 예금은 예금을 해지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따라서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에서 원천징수세액 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제14조(잔액증명서)

만기일 이전에 이 예금의 잔액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금에서 제9조에 따라 지급한 "먼저 받은 이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잔액증명서에 표기합니다.

## 제15조 (만기 자동해지)

- ① 이 예금은 자동 재가입을 신청하지 않거나 최대 자동 재가입 횟수를 초과한 경우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근거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 자동해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1. 이 예금에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 근거계좌에 입금제한 또는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제2항 제2호에 의해 만기에 자동해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직접 해지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원금에서 원천징수세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이체
  - 2.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직접 해지하여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원금에서 원천징수세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이체

## 제16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상속인이 토스뱅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 고객센터 1661-7654 | 사업자번호 462-86-01671



이 약관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